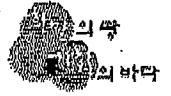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 2012 시온 객안보정상회의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 관련 보완 지침 시달

1. 건축기획과-1951호(2012.2.23)와 관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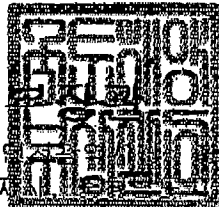
2. 현재 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3.14~) 중이며, 위호 관련 지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 지침을 시달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준 : 지침 시달일(2.23) 기준으로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지침(공동주택의 정북방향 일조기준은 전용·일반주거지역에서만 적용) 적용 가능

나. 적용대상

-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건축심의 포함)를 신청한 경우
- 2)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건축심의 포함)을 신청한 경우 및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한 경우
-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인가를 신청한 경우
- 6)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허가·승인·인가 등을 신청한 경우. 끝.

국토해양



수신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 충청북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강민석	시책시무관	김철중	과장	신경 03/27
					정태화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312 (2012. 03. 27.) 접수 / http://www.mltm.go.kr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 대국민공개
 전화 02-2110-8216 전송 02-503-7324 / k3ms@mltm.go.kr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력이다